

TaxFlash

May 2026 / No. 08



Page 1
Pillar Two GloBE Rules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Pillar Two GloBE 규정의 행정적 이행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정에 따른 추가세(*Top-up Tax*)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PMK-136¹이 발행된 이후, 2026년 5월 4일 국세청장(DGT)은 해당 제도의 행정적 이행을 규정하기 위해 PER-6²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GloBE 등록
- GloBE 연차세무신고서(ATR)
- GloBE 정보신고서(GIR)
- 추가세(*Top-up Tax*) 납부
- 사후신고조정
- 모니터링 및 조세 분쟁
- 경과규정에 따른 간이보고 체계

PER-6에 따르면, GloBE 과세연도(*GloBE Imposition Year*)는 GloBE 추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연도를 의미하며, 회계연도(*Fiscal Year*)는 ATR에 명시된 과세연도로서 GloBE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GloBE 등록

GloBE 납세자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 CE*)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JV*) 그룹은 최초 GloBE 과세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납세자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GloBE 납세자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는 Core Tax 시스템을 통해 접수증 및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통지서를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또한, 해당 등록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근거한 행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직권(*ex officio*)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GloBE 납세자 지위에 대한 정보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요청 또한 Core Tax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GloBE 연간세금신고서(GloBE Annual Tax Return, ATR)

GloBE ATR은 전자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GloBE 과세연도(*GloBE Imposition Year*) 및 회계연도(*Fiscal Year*), 납세자 식별번호, 납세자 명칭, 신고서 상태(정상/수정), 신고 의무 유형(GloBE/미과세지급규칙(UTPR)/국내최저추가세(DMTT)), 사용 통화, 서명 등.

ATR은 인도네시아 루피아 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 내 여러 GloBE 납세자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그룹은 추가세(*Top-up Tax*) 산정을 위해 루피아 또는 연결재무제표 통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5개연도 선택(*Five-Year Election*)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GloBE 납세자는 ATR에 GloBE 과세연도를 자신의 회계기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GloBE 납세자의 회계기간이 인도네시아 소재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의 회계기간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납세자는 UPE의 회계기간을 GloBE 과세연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ATR은 GloBE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Core Tax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 신고 연도의 경우, 4개월 기한 이전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관련 납부 증빙(해당 시)을 첨부함으로써 추가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자 식별번호의 유효성 및 제출 자료의 완전성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증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전자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ATR은 사후신고조정(*Post-Filing Adjustments*)을 제외하고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ATR 양식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주요 양식 및 포함내용:**
 - a. **GloBE 세금신고서** – UPE가 신고
국가별 소득포함규칙(IIR) 및 UTPR에 따른 추가세 계산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DMTT 계산을 포함합니다.
 - b. **UTPR 세금신고서** – UPE가 아닌 GloBE 납세자 중 UTPR이 배분된 납세자가 신고.
 - c. **DMTT 세금신고서** – 각 구성기업(CE)이 신고
소액면제 기준(*de minimis exclusion*), 인도네시아 유효세율(ETR), 각 구성기업의 ETR, 인도네시아 DMTT 추가세, GloBE 납세자 기준 DMTT 추가세 포함.

- **첨부자료**

- I. A. IIR 추가세
B. 인도네시아 DMTT
- II. GloBE 납세자에게 배분된 UTPR 추가세
- III. A. GloBE 소득/손실
B. 조정 대상 법인세
C. 국제 해운소득 제외
D. 실질기반 소득 제외
E. 추가 당기 추가세
F. GloBE 납세자 기준 DMTT 추가세

3. GloBE 정보신고서(GIR) 및 통지

최상위 모회사(UPE)는 GloBE 정보신고서(GIR)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a. 구성기업(CE) 식별 정보
- b. 그룹 구조
- c. 다음 항목에 대한 계산 내역:
 - 각 구성기업에 대한 국가별 유효세율(ETR) 및 추가세
 - 합작투자(JV) 관련 추가세
 - IIR 및 UTPR 기준 국가별 추가세 배분
- d. GloBE 관련 선택 사항

UPE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아닌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loBE 납세자 중 하나가 국세청(DGT)에 GIR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GloBE 납세자가 그룹으로부터 신고 주체(*Filing Entity*)로 지정된 경우; 또는
- 신고 주체인 구성기업(*Filing CE*)이 해당 GloBE 과세연도에 인도네시아와 적격 권한당국 간 협정(QCA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QCAA 체결 국가 목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국가들과는 GIR가 자동으로 교환됨)

GIR을 제출하지 않는 GloBE 납세자는 전자 형식의 통지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과세연도 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Pillar Two 그룹에 속하는 경우, 각 그룹별로 별도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IR 및 통지는 GloBE 과세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 신고 연도의 경우 15개월 대신 18개월 이내 제출이 허용됩니다. GIR 및 통지는 납세자 포털, 웹사이트 또는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된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성 및 제출되며, 제출 접수증은 GloBE ATR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GIR은 국세청 통지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통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4. 추가세 납부

추가세는 GloBE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 납부서에는 납부 연도로서 해당 GloBE 과세연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사후신고조정

특정 GloBE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세액(*covered tax*)에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 조정으로 인해 과세대상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는 조정이 이루어진 GloBE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세액 증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감소하는 경우에는 추가 당기 추가세(*Additional Current Top-up Tax*) 규정에 따라, 감소가 발생한 GloBE 과세연도에 과세대상 세액 및 GloBE 이익을 조정하여 유효세율(ETR) 및 추가세(*Top-up Tax*)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각 관할권별 GloBE 과세연도 기준 EUR 1,000,000 미만), 납세자는 해당 감소를 조정이 발생한 GloBE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세액 감소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모니터링 및 조세 분쟁

국세청(DGT)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GloBE 납세자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Pillar Two 제도의 이행과 관련하여 준수 여부 확인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loBE 납세자는 *Pillar Two* 의무와 관련된 세액결정 또는 세금고지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세목에 적용되는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항소 및 소송 등 조세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과도기 간소화 보고 체계

신고 구성기업(*Filing CE*)은 추가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각 구성기업별로 추가세를 배분할 필요가 없는 관할권에 대해, 간소화된 국가별 보고 체계를 적용하여 GI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체계에 따라 재무회계상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대한 조정은 국가별 집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단, 국세청은 해당 체계를 적용하여 GIR을 제출한 GloBE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체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해당 일에 개시되는 GloBE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2030년 6월 30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ka Putra

raka.putr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gga Wardhani

angga.w.wardhani@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